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708

2019. 6. 1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19. 5. 24. 서울특별시장 제출 (2019. 5. 30 회부)

2. 제안이유

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광장의 부속시설물인 상가, 주차장, 자전거보관소는 각각 「서울특별 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리함(안 제3조)
- 나. 시장은 광장의 사용,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마곡일반산업단지 의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다.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(안 제5조)
- 라. 시장은 사용 목적과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허

- 가 여부를 결정하고,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음(안 제6조제1항)
- 마.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순서로 허가하고,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,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함(안 제6조제2항)
- 바.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되,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(안 제7조)
- 사. 불허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(안 제8조)
- 아. 시장은 사용허가 이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(안 제9 조)
- 자. 사용자가 신청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광 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음(안 제10조)
- 차.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고, 사용일이 지난 후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(안 제11조)
- 카. 혁신기술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을 사용하는 법인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3조)

4. 검토의견

□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

-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마곡산업단지 내 지하주차장, 상가, 자전거보관소의 부속시설이 있는 마곡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 기 위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- 마곡광장은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하여, 지하철과 지하보도로 연결되어 있으며, 상가, 주차장, 자전거보관소 등 해당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하여 규모는 12,979㎡으로서, 지하·지상을 통합하는 썬큰형 광장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.

※ 마곡광장 개요

○ 위치 :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

○ 면적 : 12,979㎡(광장 및 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, '12.10)

구 분	지상1층	지하1층	지하2층
연 면 적	$1,110.83m^2$	$10,317.43m^2$	$10,957.39m^2$
주요시설	- 광장 - 자전거보관소(200대)	- 상가 14개(2,400㎡) - 지하공공보도, 연결보도 - 썬큰 광장	- 주차장(200대) - 기계·전기시설 - 지하공공보도
관리방식	- 광장:시설관리 용역	- 상가 : 통합운영사업자	- 주차장관리 : 시설관리용역

○ 사업비 : 461억 원(공사비 450억원, 설계비 11억원)





조례안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(안 제3~4조), 사용신청·허가·제한 및 통지(안 제 5~7조),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·정지(안 제8~9조),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(안 제11~12조) 등임.

□ 주요사안별 검토의견

가. 광장의 관리 및 위탁 운영(안 제3조 및 제4조)

○ 마곡광장의 관리범위는 광장과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임. 부속시설물인 상가와 주차장, 자전거보관소는 해당 조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되, 마곡광장 전체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법1) 및 조례2)에 따라 마곡산업 단지 관리기관(현재는 SH공사3))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 산업단지 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 려는 것으로 이해됨.

^{1) 「}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0조(관리권자 등)

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^{1.}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^{2.}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)

^{3.}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^{1.} 관리권자

^{2.}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
^{3.}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

^{4.}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

^{5.}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(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)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^{2) 「}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관리업무의 위탁)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**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** 업진홍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³⁾ 위수탁 기간 : 2018.5.1.~2020.12.31

○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

- 위탁운영 : 서울주택도시공사(마곡산업단지관리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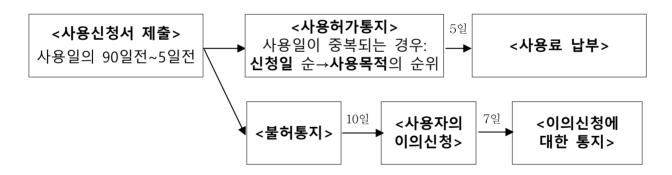
- 관리범위 : 마곡광장과 부속된 시설물(상가, 주차장, 자전거보관소 등)

※ 해당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관리 : 상가(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), 주차장(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), 자전거보관소(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)

나. **사용허가기준**(안 제5조 및 제6조) 및 **사용료 징수**(안 제11조)

○ 광장 사용신청은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, 신청일이 동일하고 우선순위끼리 경합할 경우, 마곡산업단지와 관련 된 행사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였으며, 우선순위 중복시에는 마곡산업 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음.

<광장사용 신청 절차>(안 제5조~제8조)



※ 동일한 사용일에 중복되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

- 신청순서에 따라 허가하되. 다음 순으로 우선 허가 가능
 - ①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
 - ②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
 - ③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 - ④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·예술행사
 - ⑤ 어린이, 청소년,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

- 이는 마곡산업단지내 광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입주기업 등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등을 위해 제정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 따르려는 것으로 파악됨.
-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, 별표의 범위(㎡/시간, 10~20원)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, 광장사용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겠음.

다. 혁신기술 지원(안 제13조)

○ 시장은 4차 산업혁명,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시 필요한 지원(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장소로 주차장 제공 등)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라. 종합

○ 이 조례안은 서울식물원 개장('18.10.11 임시개장, '19.5.1 정식개장) 및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시민과 입주기업의 마곡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곡광장의 사용신청 절차, 허가 및 제한,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,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참고로, 이 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제출하도록 한 광화문광장이나 청계천 광장과는 달리 신청기간이 가장 긴 서울광장과 동일한 사용일인 90일 전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,4)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기술 관련 광장사용 시 부속시설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 다른 광장 조례와 차이가 있음.

⁴⁾ 이는 신청가능 시점을 충분하게 두어 계획적인 장소확보와 행사를 위해 시간제한 으로 야기되는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례규칙 규제심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
연 락 처	02-2180-8205
이 메일	kslimga@seoul.go.kr

(참 고) 서울시 내 광장 개요

1. 서울광장 (2004년 조성)

○ 위치 : 중구 태평로1가

○ 면적 : 13,207㎡ (잔디 6,449㎡, 화강석 6,758㎡)

○ 시설 : 분수대, 화단

○ 특징 : 잔디광장 둘레에 48개의 조명등 설치

○ 조례 :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2. 청계광장 (2005년 조성)

○ 위치 : 종로구 서린동 148

○ 면적 : 1.700㎡

○ 시설 : 청계광장 소라탑. 다리 총22개. 분수 총 12개. 진입로 총 57개소

○ 특징 : 청계천 발원지에 조성됨

○ 조례 :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

3. 광화문광장 (2009년 조성)

○ 위치 : 종로구 세종대로 172

○ 면적 : 18.840㎡ (길이 555m. 너비 34m)

○ 시설 : 분수, 이순신 동상, 세종대왕 동상, 역사물길, 해치마당 등

○ 특징 : 이순신장군동상 뒤편에 지상과 광화문역을 연결하여 해치마당이 조성

○ 조례 :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4. 세운광장 (2017년 조성)

○ 위치 : 종로구 장사동 116-3

○ 면적 : 1,123㎡

○ 시설 : 광장, 계단, 가로등배너

○ 특징 : 종로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2층에 닿는 경사광장

○ 조례 :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